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시형소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7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도시형소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	2
※ 참고자료	5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개요	5
2. 공공조달 관련 통계자료	6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제도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05. 21.
3. 회부연월일 : 2025. 05.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 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시형소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 ----- ----- ----- ----- ----- <u>.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7조1)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조달계약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 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소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²⁾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³⁾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개정안은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내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품목의 비중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됨.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개정안의 내용만으로 공공기관의 도시형소공인 생산제품 구매가 실제로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내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품목의 비중이 올라가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할 때 도시형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등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의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609개 중 서비스용역 29개와 광업 4개 제품을 제외한 576개 제품 (94.6%)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현재도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경쟁 제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4)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도시형소공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한 매출액은 4조 3,495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조달액 24조 5,640억원의 17.7%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자료 2】 공공조달 관련 통계자료의 2024년 기업규모별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현황 참조.

【참고자료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개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0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 (제품)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되며, '25~'27년간 유효한 경쟁제품 총 206개(세부품목 기준은 609개) 지정 고시 ('24.12)

☐ 제도연혁

-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65년 공공기관이 특정 중소기업 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시행
 - 경쟁이 배제된 환경에서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의 특성으로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 개선과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중기간 경쟁제도 도입

☐ 지정원칙

-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 및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경쟁제품 지정요건 및 절차

- (요건) ①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및 ②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 10개 이상
- (절차) 중기중앙회의 추천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민관합동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2】 공공조달 관련 통계자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4년 공공구매 조달 시장 현황(대상 공공기관 842개 기준)

- 공공기관 총 구매액 : 170.7조원(100%)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 : 131.0조원(76.8%)
- 공공기관 중기간 경쟁제품 총 구매액 : 29.3조원(17.2%)

□ 전체물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규모

- '25년 기준 12,845개 세부품목 중 609개(4.7%) 품목 지정

□ 직접생산 기업 현황

직접생산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56,679(100.0%)	35,998(63.5%)	20,681(36.5%)	10,637(18.8%)

* 소기업 기준 : 매출액(120억원 미만, 업종별 상이),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광업 등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24년 기업규모별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합계		수의계약		경쟁입찰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소상공인	45,310	240,919	9,591	14,667	8,104	5,192	27,615	221,060
도시형 소공인(%)	43,495 (96.0)	237,054 (98.4)	9,097 (94.8)	14,280 (97.4)	7,255 (89.5)	4,762 (91.7)	27,143 (98.3)	218,012 (98.6)
소기업	45,771	293,561	11,818	22,768	10,012	5,274	23,941	265,519
중기업	106,271	477,847	43,219	88,135	30,256	8,683	32,796	381,029
적격조합 등	48,288	202,744	5,445	6,902	131	273	42,712	195,569

【참고자료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제도

□ 제도 개요

- **(경쟁제품)**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되며, '25~'27년간 유효한 경쟁제품 총 610개 제품 지정 고시('24.12)

* 지정 현황:('16년) 775개 → ('19년) 611개 → ('22년) 632개 → ('25년) 610개

- **(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중기간 경쟁제품 중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별도 지정
 -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 제품'은 공공기관이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계약 체결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 제품 지정 요건 및 절차

- ①중기간 경쟁제품(610개 제품) 중에서 ②소기업 수주비율(금액)이 20% 미만이고, ③공공조달 참여 소기업 비율(기업수)이 30% 이상인 제품
- 중기중앙회에서 조합·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 후 중기부로 추천하면, 부처 협의 이후 지정·공고

□ 그간 운영 현황

- '13년 제도 도입 이후 '19년까지 소폭 증가추세였으나, '22년 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용역·서비스 위주로 지정*

*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②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④운영위탁서비스, ⑤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⑥빅데이터분석서비스

- '13년~'19년 지정시 타월, 소모직물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생산 가능한 제품이 다수 포함 되었으나,
- '22년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신청 제품 중 제조 물품은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계약비율이 20%이상*으로 추천요건에 미해당

* 모자이크 타일(60%), 영상감시장치(58%), 보행매트(98%), 부조타일(25%)

< 중기간 경쟁제품 및 소공인 우대제품 지정 현황 >

구분	'13	'16	'19	'22	'25
중기간 경쟁제품	795	775	611	632	610
소공인 우대제품	26	23	29	6	지정 예정

- '25년 ~ '27년은 중기중앙회에서 조합·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중기부로 **'25.하반기 추천 시 지정 검토할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